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차 례

입 법 예 고

고양시 공고
제2025-2149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고양시 공고
제2025-2150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8

고양시 공고 제2025-2149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9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 이유

-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성공적인 시책 추진을 위한 조직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구 조정

- 1) 4급 기구 및 소관사무를 조정함(안 제3조, 제4조,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가) 신설(+3): 재난안전국, 일자리경제국, 주택건축국

나) 폐지(△1): 도시혁신국

다) 명칭변경(4)

- 일자리재정국 → 재정국

- 사회복지국 → 시민복지국
- 기후환경국 → 기후에너지국
- 도시주택정책실 → 도시정책실

2) 5급 기구 및 소관사무를 조정함(안 제3조,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및 제30조).

가) 신설(+5)

- 본청(4): AI전략담당관, 에너지정책과, 구조물관리과, 공공건축과
- 직속기관(1): 농업기술센터 동물정책과

나) 명칭변경(5)

- 주민자치과 → 자치분권과
- 복지정책과 → 돌봄정책과
- 기후에너지과 → 기후대기과
- 공사과 → 도로건설과
- 시민봉사과 → 민원지적과

다) 명칭·배치변경(3)

- 정보통신담당관(기획조정실) → 정보통신과(자치행정국)
- 시민안전담당관(제2부시장) → 안전정책과(재난안전국)
- 재난대응담당관(제2부시장) → 재난대응과(재난안전국)

라) 배치변경(12)

- 회계과, 재산관리과: 자치행정국 → 재정국
-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일자리재정국 → 일자리경제국
- 식품안전과: 기후환경국 → 일자리경제국
- 기업지원과: 자족도시실현국 → 일자리경제국
- 주택과, 건축정책과, 토지정보과: 도시주택정책실 → 주택건축국
- 신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 도시개발과: 도시혁신국 → 도시정책실

나. 정원 조정(안 제34조 및 별표 6)

- 1) 총 정원: (현행) 3,445명 → (조정) 3,533명 (증 88명)
- 2) 직급별 정원 조정

- 가) 4급: (현행) 17명 → (조정) 19명 (증 2명)
- 나) 5급: (현행) 153명 → (조정) 159명 (증 6명)
- 다) 6급 이하: (현행) 3,226명 → (조정) 3,307명 (증 81명)
- 라) 전문경력관: (현행) 4명 → (조정) 3명 (△1명)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 가. 제출기일: 2025년 9월 19일까지
-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번호, 의견
-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기획정책관)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기획정책관 조직제안팀 031-8075-2394
 - 팩 스: 031-8075-490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실·국장”을 “실장·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가목 중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
립단”을 “신청사건립단”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도시정책실, 자족도시실현국, 재난안전국, 일자리경제국, 주택
건축국, 교통국 소관 사무

제4조제1호 중 “일자리재정국, 사회복지국, 기후환경국”을 “재정국, 시
민복지국, 기후에너지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부시장: 도시정책실, 자족도시실현국, 재난안전국, 일자리경제
국, 주택건축국, 교통국

제5조제3항 중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을 “신
청사건립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
다.

제6조제1항 중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을 “법무담당관, AI전략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AI 전략기획 및 AI 사업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중 “주민자치과, 민원여권과, 회계과, 재산관리과”를 “자치분권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7. 행정정보화, 정보통신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정국에 두는 과) ① 재정국에 재산관리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를 둔다.

② 재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유지·공유지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2. 경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정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

제9조의 제목 “(사회복지국에 두는 과)”를 “(시민복지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회복지국에 복지정책과”를 “시민복지국에

돌봄정책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회복지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기후에너지국에 두는 과) ① 기후에너지국에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에너지정책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② 기후에너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종합기획 및 조정, 관리보전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및 대기환경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4. 청소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도시정책실에 두는 과) ① 도시정책실에 도시계획정책관, 신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 도시개발과, 스마트시티과를 둔다.

② 도시정책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에 관한 검토·기획·지도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4. 신도시 정비에 관한 사항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사항

6. 도시개발, 택지개발, 공공개발에 관한 사항

7. 스마트도시 조성 업무에 관한 사항

제13조제1항 중 “경제자유구역추진과, 기업지원과”를 “경제자유구역추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드론산업”을 “미래항공산업, 양자산업”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재난안전국에 두는 과) ① 재난안전국에 안전정책과, 재난 대응과, 구조물관리과를 둔다.

② 재난안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정책 총괄·조정, 안전점검, 민방위에 관한 사항
2. 재난 상황 관리, 비상대비 등 재난·재해 예방 대책 수립,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로구조물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를 삭제하고, 제14조를 제15조로 하며,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일자리경제국에 두는 과) ① 일자리경제국에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소상공인지원과, 식품안전과를 둔다.

② 일자리경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지원, 취업 지원, 공공일자리, 노사 협력에 관한 사항
2. 기업지원,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등록,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공유경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5. 식품위생·안전 및 음식문화에 관한 사항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주택건축국에 두는 과) ① 주택건축국에 주택과, 건축정책과, 공공건축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주택건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주택 건축, 건축물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청사 및 시 발주 각종 건설사업 추진
5. 지적 및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

제22조 중 “농산유통과”를 “농산유통과, 동물정책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농업·농촌·식품산업 종합계획 수립
2. 농축산 지원 및 농업생산기반정비에 관한 사항
3. 고양화훼단지, 화훼유통시설 관리 및 고양국제박람회재단에 관한 사항
4.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및 농산물의 유통촉진과 판로확보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6. 동물정책, 동물보호 및 동물구조에 관한 사항
7. 농업경영 개선 및 재배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
8. 농촌 생활개선 지도·교육에 관한 사항
9. 화훼 시험·연구·기술개발·육종에 관한 사항

제26조제4호 중 “공사과”를 “도로건설과”로 한다.

제27조제4호가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제1항 중 “시민봉사과”를 “민원지적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법 제3조제3항·4항 및 제7조제1항·4항”을 “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7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3,533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3,463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70명

별표 3의 제목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27조 관련)”을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28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34조 관련)”을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35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4조 관련)”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5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

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사회복지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② 고양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도시주택정책실장, 사회복지국장”을 “도시정책실장, 시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③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도시혁신국장, 기획조정실장, 도시주택정책실장”을 “도시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주택건축국장”으로 한다.

④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도시주택정책실장, 자치행정국장”을 “도시정책실장, 재정국장”으로 한다.

⑤ 고양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3항 중 “기후환경국장, 환경정책과장, 기후에너지과장”을 “기후에너지국장, 환경정책과장, 기후대기과장, 에너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⑥ 고양화훼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도시주택정책실장”을 “도시정책실장”으로 한다.

⑦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일자리재정국장, 도시주택정책실장”을 “도시정책실장,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⑧ 고양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도시주택정책실장, 일자리재정국장, 교육문화국장, 도시혁신국장”을 “도시정책실장, 교육문화국장,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⑨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도시혁신국장”을 “도시정책실장”으로 한다.

⑩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혁신국장”을 “도시정책실장”으로 한다.

⑪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도시혁신국장”을 “도시정책실장”으로 한다.

⑫ 고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시민안전담당관”을 “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

⑬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재난대응담당관”을 “재난대응과장”으로 한다.

⑭ 고양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자족도시실현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⑮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일자리재정국장, 사회복지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⑯ 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시민봉사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

소관부서		기획정책관
입 안 자	부 서 장 성 명	기획정책관 안 영 선
	팀 장 성 명	조직제안팀장 송 대 호
	담 당 자 성명 · 전화	김 세 영 (031-8075-2394)

[별표 6]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6조 관련)

(단위: 명)

직급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	동
합계		3,533	-					
정무직	소계	1	-					
	시장	1	1	-	-	-	-	-
일반직	소계	3,498	-					
	2급	2	2	-	-	-	-	-
	3.4급	4	2	1	-	-	1	-
	4급	19	10	-	3	4	2	-
	4.5급	4	3	-	-	-	1	-
	5급	159	51	6	12	13	33	44
	6급 이하	3,307	-					
	전문경력관 소계	3	-					
별정직	소계	5	5	-	-	-	-	-
	5급 상당	1	1	-	-	-	-	-
	6급 상당 이하	4	4	-	-	-	-	-
지도직	소계	20	-					
	지도관	3	-	-	3	-	-	-
	지도사	17	-					
연구직	소계	9	-					
	연구사	9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u>실·국장</u> 의 직급과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생략)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 -- <u>실장·국장</u> ----- ----- ----- -----.
제3조(부시장) ①·② (생략) ③ (생략) 1. (생략) 가. <u>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u> 소관 사무 나. <u>도시주택정책실, 자족도시실현국, 교통국, 도시혁신국</u> 소관 사무 다. (생략) 2.·3. (생략)	제3조(부시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u>신청사건립단</u> ----- ----- ----- 나. <u>도시정책실, 자족도시실현국, 재난안전국, 일자리경제국, 주택건축국, 교통국</u> 소관 사무 다.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제4조(실·국의 설치) (생략) 1. 제1부시장: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u>일자리재정국, 사회복지</u>	제4조(실·국의 설치) (현행과 같음). 1. ----- ----- <u>재정국, 시민복지국,</u>

지국, 기후환경국, 교육문화국

2. 제2부시장: 도시주택정책실, 자족도시실현국, 교통국, 도시혁신국

제5조(보좌기관) ①·② (생략)

③ 제2부시장 밑에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을 둔다.

④ (생략)

1. ~ 4. (생략)

5. 시민안전담당관: 안전정책 총괄·조정, 안전점검, 민방위에 관한 사항

6. 재난대응담당관: 재난 상황관리, 비상대비 등 재난·재해 예방 대책 수립,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7. (생략)

제6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기획조정실에 기획정책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을 둔다.

② (생략)

1. ~ 7. (생략)

8. 행정정보화, 정보통신 관리에

기후에너지국-----

2. 제2부시장: 도시정책실, 자족도시실현국, 재난안전국, 일자리경제국, 주택건축국, 교통국

제5조(보좌기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신청사건립단-----

-----.

④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7. (현행과 같음)

제6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

----- 법무담당관, AI전략담당관-----.

②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AI 전략기획 및 AI 사업 발

관한 사항

제7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

자치행정국에 행정지원과, 인적
자원과, 주민자치과, 민원여권
과, 회계과, 재산관리과를 둔다.

② (생략)

1. ~ 6. (생략)

7. 경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8. 국·공유지 재산관리, 청사관
리에 관한 사항

제8조(일자리재정국에 두는 과)

① 일자리재정국에 일자리정책
과, 소상공인지원과, 세정과, 징
수과를 둔다.

② 일자리재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지원, 취
업 지원, 공공일자리, 노사 협
력에 관한 사항

2. 청년 일자리, 복지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공유경제,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굴·육성에 관한 사항

제7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

----- 자치분권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②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행정정보화, 정보통신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제8조(재정국에 두는 과) ① 재정

국에 재산관리과, 회계과, 세정
과, 징수과를 둔다.

② 재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분장한다.

1. 국유지·공유지 재산관리, 청
사관리에 관한 사항

2. 경리 및 계약에 관한 사항3. 지방세정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정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

제9조(사회복지국에 두는 과) ①

사회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아동보육과를 둔다.

② 사회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제10조(기후환경국에 두는 과) ①

기후환경국에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식품안전과를 둔다.

② 기후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종합기획 및 조정, 관리보전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대기환경,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산업에 관한 사항

3. 청소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4. 청소시설 및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위생관리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9조(시민복지국에 두는 과) ①

시민복지국에 돌봄정책과-----

-----.

② 시민복지국장-----

-----.

1. ~ 6. (현행과 같음)

제10조(기후에너지국에 두는 과)

① 기후에너지국에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에너지정책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② 기후에너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종합기획 및 조정, 관리보전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및 대기환경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4. 청소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제12조(도시주택정책실에 두는

과) ① 도시주택정책실에 도시
계획정책관, 주택과, 건축정책
과, 토지정보과, 스마트시티과
를 둔다.

② 도시주택정책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에 관한 검토·기획
·지도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6. 일반주택 건축, 건축물 안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적 및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 조성 업무에 관
한 사항

제13조(자족도시실현국에 두는

과) ① 자족도시실현국에 경제
자유구역추진과, 기업지원과,
전략산업과, 미래산업과를 둔

제12조(도시정책실에 두는 과) ①

도시정책실에 도시계획정책관,
신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 도
시개발과, 스마트시티과를 둔
다.

② 도시정책실장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에 관한 검토·기획
·지도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4. 신도시 정비에 관한 사항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재건
축, 재개발에 관한 사항
6. 도시개발, 택지개발, 공공개
발에 관한 사항
7. 스마트도시 조성 업무에 관
한 사항

제13조(자족도시실현국에 두는

과) ① ----- 경제자
유구역추진과-----

다. ② (생 략) 1. (생 략) 2. <u>기업지원, 지식산업센터 및</u> <u>공장등록, 창업지원에 관한 사</u> <u>항</u> 3. (생 략) 4. 4차산업, 방송영상산업, 콘텐 츠산업, 드론산업에 관한 사항 <u><신 설></u> <u>제14조 (생 략)</u> <u><신 설></u>	--.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현행과 같음) 4. ----- ----- <u>미래항공산업, 양자산</u> <u>업</u>----- <u>제13조의2(재난안전국에 두는 과)</u> ① <u>재난안전국에 안전정책과,</u> <u>재난대응과, 구조물관리과를 둔</u> <u>다.</u> ② <u>재난안전국장은 다음 각 호</u> <u>의 사항을 분장한다.</u> 1. <u>안전정책 총괄·조정, 안전점검,</u> <u>민방위에 관한 사항</u> 2. <u>재난 상황 관리, 비상대비 등</u> <u>재난·재해 예방 대책 수립,</u> <u>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u> 3. <u>도로구조물 등의 안전 및 유</u> <u>지관리에 관한 사항</u> <u>제15조 (현행 제14조와 같음)</u> <u>제14조(일자리경제국에 두는 과)</u> ① <u>일자리경제국에 일자리정책</u>
--	---

과, 기업지원과, 소상공인지원과, 식품안전과를 둔다.

② 일자리경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지원, 취업 지원, 공공일자리, 노사 협력에 관한 사항

2. 기업지원,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등록,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공유경제,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5. 식품위생·안전 및 음식문화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4조의2(주택건축국에 두는 과)

① 주택건축국에 주택과, 건축정책과, 공공건축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주택건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주택 건축, 건축물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도시혁신국에 두는 과) ①

도시혁신국에 신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 도시개발과를 둔다.

② 도시혁신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신도시 정비에 관한 사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 택지개발, 공공개발에 관한 사항

제22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과)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도시농업과, 연구개발과를 둔다.

제2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농업·농촌·식품산업 종합계획수립
2. 농축산 지원 및 농업생산기반정비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양화훼단지 및 화훼유통시

4. 공공청사 및 시 발주 각종 건설사업 추진

5. 지적 및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

<삭 제>

제22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과)

----- 농산유통과, 동물정책과-----
-----.

제2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농업·농촌·식품산업 종합계획 수립
2. 농축산 지원 및 농업생산기반정비에 관한 사항
3. 고양화훼단지, 화훼유통시설관리 및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및 고양국제박람회재단에 관
한 사항
6. 농업경영 개선 및 재배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
7. 농촌 생활개선 지도·교육에
관한 사항
8. 화훼 시험·연구·기술개발
·육종에 관한 사항
9. 농산물의 유통촉진과 판로확
보에 관한 사항

제26조(사업소에 두는 과) (생 략)

1. ~ 3. (생 략)
4.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 공사
과, 도로관리과, 차량등록과

제27조(소관사무) (생 략)

1. ~ 3. (생 략)
4. (생 략)
가. 공공청사 및 시 발주 각종
건설사업 추진
나. (생 략)
다.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구조물·조명시설 유지관

에 관한 사항

4.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및 농산물의 유통촉진과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6. 동물정책, 동물보호 및 동물
구조에 관한 사항
7. 농업경영 개선 및 재배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
8. 농촌 생활개선 지도·교육에
관한 사항
9. 화훼 시험·연구·기술개발
·육종에 관한 사항

제26조(사업소에 두는 과) (현행
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도로
건설과-----

제27조(소관사무)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삭 제>

나. (현행과 같음)

<삭 제>

<u>리에 관한 사항</u> 라.·마. (생 략) 제30조(구에 두는 과) ①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과, <u>시민봉사과</u>, 세무1과 및 세무2과(덕양구에 한정한다), 세무과(일산동구·일산서구에 한정한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덕양구에 한정한다),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축물관리과(덕양구에 한정한다)를 둔다. ② (생 략) 제31조(설치) ① <u>법 제3조제3항·4항 및 제7조제1항·4항에</u> 따르 동을 둔다. ② (생 략) 제34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u>정원의 총수는 3,445명으로 다</u> <u>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u> 1. 집행기관의 정원: 3,379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66명	라.·마. (현행과 같음) 제30조(구에 두는 과) ① ----- ----- ----- <u>민원지적과</u>-----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설치) ① <u>법 제3조제3항·</u> <u>제4항 및 제7조제1항·제4항--</u> -----.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u>정원의 총수는 3,533명으로 다</u> <u>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u> 1. 집행기관의 정원: 3,463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70명
---	---

현행	개정안
[별표 3] <u>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27조 관련)</u> (생략)	[별표 3] <u>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28조 관련)</u> (현행과 같음)
[별표 4] <u>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34조 관련)</u> (생략)	[별표 4] <u>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35조제1항 관련)</u> (현행과 같음)
[별표 5] <u>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4조 관련)</u> (생략)	[별표 5] <u>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5조제2항 관련)</u>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별표 6]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6조 관련) (단위 : 명)									[별표 6]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6조 관련) (단위 : 명)								
직급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	동	직급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	동
합계		3,445	-						합계		3,533	-					
정무직	소계	1	-						정무직	소계	1	-					
	시장	1	1	-	-	-	-	-		시장	1	1	-	-	-	-	-
일반직	소계	3,410	-						일반직	소계	3,498	-					
	2급	2	2	-	-	-	-	-		2급	2	2	-	-	-	-	-
	3.4급	4	2	1	-	-	1	-		3.4급	4	2	1	-	-	1	-
	4급	17	8	-	3	4	2	-		4급	19	10	-	3	4	2	-
	4.5급	4	3	-	-	-	1	-		4.5급	4	3	-	-	-	1	-
	5급	153	47	5	11	13	33	44		5급	159	51	6	12	13	33	44
	6급 이하	3,226	-							6급 이하	3,307	-					
	전문경력관 소계	4	-							전문경력관 소계	3	-					
별정직	소계	5	5	-	-	-	-	-	별정직	소계	5	5	-	-	-	-	-
	5급 상당	1	1	-	-	-	-	-		5급 상당	1	1	-	-	-	-	-
	6급상당 이하	4	4	-	-	-	-	-		6급상당 이하	4	4	-	-	-	-	-
지도직	소계	20	-						지도직	소계	20	-					
	지도관	3	-	-	3	-	-	-		지도관	3	-	-	3	-	-	-
	지도사	17	-							지도사	17	-					
연구직	소계	9	-						연구직	소계	9	-					
	연구사	9	-							연구사	9	-					

고양시 공고 제2025-2150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9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 이유

-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직제 순에 맞추어 소관부서 및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순서를 직제 순으로 조정함(안 별표 1).
- 나. 사무 신설에 따른 위임사무 내용 및 근거 법규를 정비함(안 별표 1 및 별표 2).
- 다. 인용 법령 및 용어 등을 현행화 함(안 별표 1 및 별표 2).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9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기획정책관)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기획정책관 조직제안팀 031-8075-2395

- 팩 스: 031-8075-490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중 “[복지정책과]”를 “[돌봄정책과]”로 하고, [돌봄정책과](중전의 [복지정책과]) 위임사무명 제1호 근거법규란 중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5조”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로 한다.

별표 2 [노인복지과] 위임사무명 제2호 단위사무명 제3호의 근거법규란 중 “「고양시 장시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별표 2 [장애인복지과] 위임사무명 제1호 단위사무명 제5호란 중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기획정책관
입안자	정책관 성명	기획정책관 안영선
	팀장 성명	조직제안팀장 송대호
	담당자 성명·전화	윤승희 (031-8075-2395)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도시디자인담당관]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광고물 등의 표시 또는 설치 관련 허가·신고 및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항(공공기관의 공공 목적 광고물을 포함한다) 2.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 3.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5.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의 취소 6. 허가, 신고, 안전점검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7.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취소, 영업정지 및 변경, 휴업 등 신고에 관한 사항 8. 옥외광고사업 손해배상 책임보험의무가입에 대한 관리 및 조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23조, 제29조 • 같은 법 제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 같은 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같은 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2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5조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17조 • 같은 법 제11조,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 같은 법 제10조의4,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55조

[감사관]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구 및 동 감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자체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2. 소속 공무원의 주의요구(경고 · 훈계·주의) 처분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양시 감사 규칙」 제21조

[행정지원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연가계획 및 허가 2. 병가 및 공가 허가	•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 제7조의6
2. 청원경찰 배치	1. 청원경찰 근무부서 배치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6조
3. 기록물관리 전산화	1. 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같은 법 제21조

[인적자원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6급 공무원에 대한 보직, 전보, 징계(다만, 구간 전보, 중징계, 5급 이상 또는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공무원과 동일 건으로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는 제외) 2.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보직, 전보, 승급, 휴직, 복직, 면직, 징계(다만, 구간 전보 및 중징계, 5급 이상 또는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공무원과 동일 사건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제외) 3.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개방형 직위 제외)	• 「지방공무원법」 제6조 • 같은 법 제6조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4 • 같은 영 제1조의4

[자치분권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자율방범대 경비 등의 지원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고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민원여권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회수 주민등록증 파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
2. 행정사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행정사 업무(변경) 신고	· 「행정사법」 제1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2. 행정사업의(휴업·폐업·재개업) 신고	·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3. 합동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및 사무소 이전 신고	· 같은 법 제10조, 제1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4. 행정사업의 지도·감독	·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5.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8조

[정보통신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구청 정보화 교육 수강료 징수 및 반환에 대한 사무	1. 수강료의 부과 및 징수 2. 수강료의 감면 3. 수강료의 반환	• 「고양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15조의2 • 같은 조례 제15조의2 • 같은 조례 제15조의3

[세정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가격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2. 개별주택가격 검증 3. 주택소유자 등의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4. 주택소유자 등의 이의신청 접수·재조사 및 가격 산정 5. 개별·공동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같은 법 제1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7조

[돌봄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보고 2.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 교육, 장제, 해산) 지급 3. 보장비용의 징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23조 • 같은 법 제9조 및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17조, 제18조 • 같은 법 제46조
2. 의료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 및 사후관리 2. 의료급여증 발급 및 변경, 재발급 3.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대불 및 대지급금 상환·독촉 4. 본인부담 급여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 「의료급여법」 제23조 • 같은 법 제12조, 제13조
3.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지원	1.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활동 지원 등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4. 긴급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긴급지원대상자 신청·접수 및 사후조사 실시	·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제8조, 제1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2. 긴급지원대상자 급여(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교육, 연료, 해산, 장제, 전기요금) 지급 및 보장비용의 환수	· 같은 법 제9조, 제1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6조까지
5. 노숙인 등의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6.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기초생활수급자 조사(자활) 보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및 제23조
	2.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자활) 지급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여성가족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한부모가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한부모가족 조사보고 2.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3.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노인복지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노인건강진단 실시 2. 경로사업(기초생활보장노인 월동난방비지원 등)의 실시 지원 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변경·휴지·폐지 신고 및 사업정지 등 명령 (노인복지관 업무 제외) 4. 기초연금(미지급연금 포함)지급 및 부당이득 환수(승인, 결정 사항 제외) 5. 효수당 지급 및 변경, 부당이득 환수	· 「노인복지법」 제27조 · 같은 법 제4조 · 같은 법 제37조제2항, 제40조제3항, 제43조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기초연금법」 제14조, 제15조, 제19조 · 「고양시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
2. 장례식장 영업의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장례식장 영업의 신고(변경, 폐업), 사업자 등록 현황 자료 유지·관리 2. 장례식장 영업에 대한 정비, 제한명령 및 시정명령 권한 3. 장례식장 행정 처분에 관한 권한 4. 장례식장에 대한 검사 및 보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0조의4 ·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같은 법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제4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같은 법 제3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1. 무연고시체 등의 처리	· 같은 법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4. 노인의료 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노인의료복지시설 변경·폐지 등 2. 노인의료복지시설 감독 3. 노인의료복지시설 사업 정지 등 4. 청문 5. 과태료	· 「노인복지법」 제40조 · 같은 법 제42조 · 같은 법 제43조 · 같은 법 제44조 · 같은 법 제61조의2
5. 재가노인 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폐지 등 2. 재가노인복지시설 감독 3.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 정지 등 4. 청문 5. 과태료	· 「노인복지법」 제40조 · 같은 법 제42조 · 같은 법 제43조 · 같은 법 제44조 · 같은 법 제61조의2
6.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장기요양기관의 변경 및 갱신 2. 장기요양기관 폐업 등 3. 장기요양기관 보고 및 검사 4. 청문 5.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처분 6. 과태료 7. 과징금 8.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승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 제33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제61조 · 같은 법 제63조 · 같은 법 제37조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37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7.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변경·폐지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감독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정지 등 4. 청문 5. 과태료	· 「노인복지법」 제40조 · 같은 법 제42조 · 같은 법 제43조 · 같은 법 제44조 · 같은 법 제61조의2

[장애인복지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장애인 보호관리	1.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보장급여(장애수당, 도비 장애수당, 장애 아동부양수당,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 가구 월동난방비)지급 3.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체납처분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 같은 법 제6조, 제38조, 제49조, 제5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38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아동보육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아동 등에 대한 조사 2.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의 지원 3.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4. 보조금의 반환명령 5. 아동수당에 관한 조사, 질문, 지급, 정지, 환수, 과태료 부과·징수, 고발 등	• 「아동복지법」 제66조 • 「입양특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0조 • 「아동복지법」 제59조 • 「아동복지법」 제61조 • 「아동수당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4조, 제26조 등
2. 보육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어린이집에 관한 다음의 사항 (국공립어린이집 제외) - 어린이집 인가에 관한 사항 (설치·변경인가 등) - 보육교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 어린이집 비용의 보조 등 - 어린이집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 어린이집 지도와 명령 - 어린이집 보고와 검사 -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등 신고 - 어린이집 시정 또는 변경 명령 - 어린이집의 폐쇄 등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2.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의2 • 같은 법 제19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제41조 • 같은 법 제42조 • 같은 법 제43조 • 같은 법 제44조 • 같은 법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3.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보육료 자격 책정 및 관리 - 가정양육수당 자격 책정 및 관리 -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1. 아동급식협력업체 지정 및 관리 2. 급식비 지원 및 정산 3. 급식업체(지역아동센터 포함) 지도점검	· 같은 법 제34조 · 「아동복지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6조
4. 어린이집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철거명령 등 2. 사고조사 등 3. 보고·검사 등 4. 과태료 부과·징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31조

[환경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토양환경보전법」 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2.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3. 손실보상 4.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신고 5. 토양오염 검사의 통보 등 6. 토지이용 등의 제한 7. 행위제한(토양오염 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의 철거명령) 8. 명령 불이행자의 대집행 9. 과태료 부과·징수	• 「토양환경보전법」 제7조 • 같은 법 제8조 • 같은 법 제9조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20조 • 같은 법 제21조제3항 • 같은 법 제24조 • 같은 법 제32조

[기후대기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악취방지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2.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 대한 개선명령 3.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4.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 대한 과징금처분 5.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6.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에 대한 개선권고 및 개선권고 미이행에 따른 조치명령 7. 조치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 「악취방지법」 제10조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제12조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제30조
2.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생활소음·진동 관련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명령 2. 폭약사용의 필요사항에 따른 조치명령 3. 교통소음 및 진동규제 지역 내의 자동차운행 규제 요청 4.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 내의 방음시설 설치 요청 5. 운행차의 수시점검, 면제, 원인의 소명 6. 운행차의 개선 및 사용정지	•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 같은 법 제25조 • 같은 법 제28조 • 같은 법 제29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3.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다음의 권한	명령·통행규제 7. 과태료 부과·징수 8. 특정공사 사전 신고 9. 이동소음원에 대한 규제 10.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 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 「소음·진동관리법」 제38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제24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에너지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권한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과태료 처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제34조, 제44조, 제48조, 제57조 및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1.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 수리 2. 고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및 과태료 처분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 같은 법 제15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3.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1. 도시가스 특정 사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 「도시가스사업법」 제27조, 제29조

[자원순환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쓰레기규격봉투 제작, 관리 및 공급 (공공용쓰레기규격봉투에 한정한다) 2.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및 취소 3. 폐기물 불법행위 적발 및 처리 4.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업무 5.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6. 폐기물 다량 배출자 신고 수리 7. 생활폐기물의 처리 (보행자전용도로를 포함한 가로청소에 한정한다)	•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 제18조 • 같은 조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 같은 조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 같은 법 제18조 • 같은 법 제15조의2 • 같은 법 제14조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추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포장폐기물 등의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 등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명령 3. 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필요한 조치명령 4.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보관 시설이나 용기 설치 등 필요한 조치 5. 빈용기의 재사용 촉진 6. 보고 및 검사 등 7. 재활용 위반행위 적발 및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 같은 법 제9조제3항 • 같은 법 제12조의3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15조의2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제39조부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3.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4.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권한	처리 1. 감량의무사업장 신고 2.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재산관리관이 지정된 공중화장실 제외) 2. 개방화장실 지정 3. 보조금 지급 4. 보고 등	제41조까지 ·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 ·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 · 같은 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제19조

[문화예술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공연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공연장업의 등록(변경) 및 등록증의 재교부 2. 재해예방 조치 3.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4. 공연장 등에 관한 지도·감독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폐기명령, 행정처분, 폐쇄조치, 증표휴대, 청문) 5. 벌칙(벌칙, 과태료, 양벌규정)	· 「공연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같은 법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 같은 법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2. 출판사 및 인쇄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신고사항 변경신고 2. 폐업 및 직권말소 3. 과태료 부과·징수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1조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3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제1항제1호·제2호, 제2항제1호·제3호
3.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영화업자 신고, 변경신고 2. 영화업자 신고증 재교부 3. 영화상영관의 등록, 변경등록 4. 영화상영의 신고, 변경신고 5. 영화상영의 제한 6.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 7. 영화상영관 영업 등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 같은 법 제26조제3항 · 같은 법 제36조제1항 · 같은 법 제41조제1항 · 같은 법 제42조 · 같은 법 제45조 · 같은 법 제46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승계신고	
	8.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의 신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변경신고·변경등록	· 같은 법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9. 비디오물제작업자·배급업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영업지위승계 신고	· 같은 법 제63조
	10.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같은 법 제64조
	11. 비디오물제작업자·배급업자,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영업소 폐쇄 및 비디오물 수거 등 조치	· 같은 법 제67조, 제68조, 제70조
	12.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 교육 및 모범적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한 지원	· 같은 법 제88조, 제89조
	13. 수수료 책정	· 같은 법 제90조
	14.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98조, 제99조
	1.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모범 게임제공영업소 지정 및 지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2. 게임제작업 또는 배급업 등록, 변경등록	· 같은 법 제25조
	3.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 등록, 신고, 변경허가, 변경등록, 변경신고	· 같은 법 제26조
	4.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영업의 지위 승계신고.	· 같은 법 제29조
	5.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폐업	· 같은 법 제30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및 직권말소	
	6.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	· 같은 법 제31조
	7.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영업 폐쇄 등 행정조치(영업정지, 허가·등록취소, 영업폐쇄, 과징금 부과, 청문)	· 같은 법 제35조, 제36조 및 제40조
	8.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폐쇄 및 수거 등 조치	· 같은 법 제38조
	9.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8조
	1.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2.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2항
	3.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 같은 법 제18조
	4. 신고증·등록증 교부	· 같은 법 제20조
	5.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 같은 법 제21조
	6. 폐업 및 직권말소	· 같은 법 제24조
	7. 등록취소, 청문	· 같은 법 제27조, 제30조
	8. 과징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28조
	9.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 같은 법 제29조
	10. 수수료 책정	· 같은 법 제31조
	11.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6조

[관광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유원시설업	1. 유원시설업 허가신청 2.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3. 그 밖의 유원시설업 영업신고 4. 그 밖의 유원시설업 영업신고 사항 변경신고 5. 벌칙 6. 양벌규정	•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 같은 법 제5조제3항 • 같은 법 제5조제4항 • 같은 법 제5조제4항 •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 같은 법 제85조

[체육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상 신고 체육시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2.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3. 회원의 모집 및 보호 4. 시정명령 5. 행정처분 6. 청문 7.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 8. 수수료 징수 9. 과태료 부과·징수 10. 휴업 또는 폐업통보 등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 • 같은 법 제17조 • 같은 법 제30조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 같은 법 제33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제37조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같은 법 제2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도시계획정책관]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지구단위계획구역 위반 건축물, 공작물 단속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33조, 제141조
3.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1.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및 공작물 설치허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같은 법 제12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17조 • 같은 법 제12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2.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 변경 및 공작물 설치허가	
	3.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분할	
4.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용도변경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증축, 개축 및 대수선, 임시시설허가 등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	• 같은 법 제12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5.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1.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행위 단속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0조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2. 불법행위에 대한 계고 및 고발 3.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철거 등의 행정대집행	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2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0조, 제30조의2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0조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6조

[도시개발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다음의 권한 및 불법행위 단속(GB 제외)	1.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경우 건축 연면적의 2천제곱미터 이하, 6층 이하) 2. 건축에 관한 구청장 신고·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행위(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 6층 이하) 3. 공작물의 설치 4. 토지 분할(「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제외) 5.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녹지·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이 아닌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6. 불법 개발행위 단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 같은 법 제133조

[안전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민방위 편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민방위대 조직·편성 및 민방위대 운용에 관한 동장 지휘·감독 권한 2. 직장민방위대 편성, 개편, 해체, 이전, 명의변경 3. 민방위 기술지원대 편성 및 결과 보고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9조, 제2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2. 민방위대 지휘 감독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관내 직장민방위 대장의 감독 2. 민방위대에 대한 정기검열 및 결과 보고	· 「민방위기본법」 제2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3. 민방위 교육 및 훈련	1. 직장민방위 대원의 교육 통지서작성 및 전달 2. 직장민방위 대원 및 기술 지원대의 교육훈련 면제 대상자 승인, 교육 불참자 조치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0조 · 같은 영 제31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4. 민방위 관련 과태료 부과	1. 민방위대 신고의무 및 교육·훈련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재난대응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1. 진화, 수방, 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2.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및 그 밖의 질서유지 3.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필요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
2.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사항	1. 우수유출저감시설 유지 관리	•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일자리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국내 유료직업 소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 2.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 3.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사업정지 및 등록취소 4.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사업현황 보고 5.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지도·단속 및 보고 6.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과태료 부과·징수	· 「직업안정법」 제19조 · 같은 법 제35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 같은 법 제50조

[소상공인지원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담배 소매인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담배 소매인의 지정 2. 담배 소매인의 지정 취소 3. 담배 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4. 담배 소매업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	• 「담배사업법」 제1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같은 법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2. 방문판매·전화 권유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업 신고 (신고, 변경, 휴업·폐업 등) 2. 시정권고 및 과태료 부과 3. 직권말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같은 법 제48조, 제66조 • 같은 법 제12조
3. 통신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통신판매신고 (신고, 변경, 휴업·폐업 등) 2. 직권 말소 3. 조사 및 감독 4. 과태료 등 행정처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제26조 • 같은 법 제31조, 제45조

[식품안전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식품접객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	1. 영업허가 신청 2.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신고) 3.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4. 폐업신고	·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같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 같은 법 제39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같은 법 제37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2. 그 밖에 식품위생업 중 시장에 대한 영업신고에 관한 사항 (다만,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 공업은 제외)	1. 영업신고 2. 변경신고 3.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4. 폐업신고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 같은 법 제37조제4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 같은 법 제39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같은 법 제37조제4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3. 집단급식소에 관한 사항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2.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 3.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종료 신고	·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 · 같은 법 제88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 · 같은 법 제88조제6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9항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4. 제1호 및 제2호의 허가, 신고 대상 식품위생영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4.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5. 행정처분, 청문, 과징금, 과태료 등 1. 식품위생영업소 지도·단속(정기 및 수시의 출입·검사·수거 등) 2.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폐기처분, 공표, 개수명령, 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및 폐쇄조치, 청문 등) 3. 과징금·과태료 처분 4. 부정·불량 식품의 지도·단속 5. 무허가·신고 식품영업(퇴폐, 변태 등)행위의 단속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 같은 법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 제78조부터 제84조까지, 제93조부터 제97조까지, 제101조, 제102조 · 「식품위생법」 제2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 같은 법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 제78조부터 제84조까지,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 · 같은 법 제101조, 제102조 · 같은 법 제4조 · 같은 법 제79조
5. 그 밖에 식중독 등 식품위생 관련 추진업무	1. 식중독 발생 관리 및 음식문화개선(모범음식점) 등 각종 시책 관련 업무	· 「식품위생법」 제47조, 제86조, 제8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1조, 제6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93조
6. 공중위생영업 영업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영업 신고 및 폐업신고 2.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3조의3까지 · 같은 법 제3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5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7. 공중위생영업 위생지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공중위생영업소 지도·단속 (보고 및 출입·검사)	·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
8. 공중위생영업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2.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같은 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6
	3. 벌칙 4. 과태료	· 같은 법 제20조 · 같은 법 제22조
9.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공중이용시설의 개선명령 및 이행확인	·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10. 공중위생영업소 위생서비스수준 평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2. 위생관리등급 공표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11.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 업 영업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영업신고 2. 휴업·폐업 및 재개업 신고 3.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같은 법 제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같은 법 제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12.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 업 위생지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지도·단속(출입·검사·수거 등)	· 「위생용품 관리법」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13.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	1. 지정명령	· 「위생용품 관리법」 제15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업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2. 폐기처분 등 3.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4. 품목 등 제조정지 5. 폐쇄조치 등 6. 과징금 처분 7. 위반사실 공표 8. 벌칙 9. 과태료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같은 법 제1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같은 법 제18조 · 같은 법 제19조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같은 법 제32조 · 같은 법 제34조
14. 소비자위생용품 위생감시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위촉·해촉 등 관리	· 「위생용품 관리법」 제27조
15. 식품표시 광고법 위반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유통 가공식품 및 식품위생업소(다만,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제외)에 대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지도·단속 2. 부당한 표시행위 및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회수 및 폐기처분, 영업정지 등, 청문) 3. 과징금·과태료 처분 4. 벌칙 5. 위반사실 공표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 같은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23조 · 같은 법 제19조, 제20조, 제31조 · 같은 법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 같은 법 제21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6. 개식용 식품접객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운영신고 2. 실태조사 3. 이행조치명령 4. 과태료 5. 벌칙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같은 법 제7조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제18조 · 같은 법 제17조

[주택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2.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의 교육 제외) 3. 관리비 및 회계운영 4. 시설 관리(행위허가·신고, 사용검사 업무, 소방안전 및 방범교육 제외) 5.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6.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 7.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등 (공동주택관리 감사 업무 제외) 8. 벌칙 및 과태료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정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 같은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같은 법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 같은 법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 같은 법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 같은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 같은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 같은 법 제90조부터 제94조까지 · 같은 법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
2.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철거명령 등 2. 사고조사 등 3. 보고·검사 등 4. 과태료 부과·징수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제16조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31조

[건축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건축물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 사용승인 등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허가, 사용승인 (다만, 증축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3. 허가 및 신고사항 변경, 용도변경, 건축물 사용승인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법」 제11조, 제16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 같은 법 제16조, 제19조, 제2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2. 위반 건축물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 위반 건축물 및 대수선할 때의 조치(다만, 건축물의 냉방설비, 조경 유지관리 및 처분은 층수와 면적의 제한을 제외한다) 2.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 3. 무단용도 변경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및 단속 4. 예방단속 및 행정처분	• 「건축법」 제7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 같은 법 제7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 같은 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41조, 제79조, 제8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 같은 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41조, 제79조, 제8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3. 건축물대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건축물대장 관리 및 작성 2. 기존 건축물 공부의 건축물 대장 이기 3. 건축물대장 발급 4. 등기촉탁	· 「건축법」 제3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법」 제39조 · 「건축법」 제13조
4. 미착공 및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조치	1. 미착공 및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조치	
5. 건축물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건축신고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 2. 가설건축물 축조 관련업무 3. 용벽 등 공작물 축조 관련	· 「건축법」 제14조 및 제16조 · 같은 법 제2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의2 · 같은 법 제83조
6. 주상복합아파트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철거명령 등 2. 사고조사 등 3. 보고·검사 등 4. 과태료 부과·징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31조
7.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 건축물)	1. 건축물 관리계획의 수립 및 유지 · 관리 행정지도 2. 건축물 긴급점검, 안전진단 등 점검 및 관리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 3. 건축물의 해체허가·(신고) · 완료신고 및 멸실 4.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 「건축물관리법」 제11조, 제12조 · 같은 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1조, 제46조 · 같은 법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 같은 법 제9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5.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계획 및 지원·관리	· 같은 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의2
	6. 빈 건축물 정비	· 같은 법 제42조, 제43조
	7.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행정조치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제40조, 제41조
8. 집합건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집합건물 관리 및 행정조치 (관리인선임, 회계감사, 분쟁조정, 고발 및 과태료 부과)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6조의2, 제65조 및 제66조
9.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구청장이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한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에 관한 사항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2.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행정대집행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7조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토지정보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토지 등의 거래계약 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또는 불허가 통보 2. 허가신청 토지에 대한 선매자 지정 및 통지 3.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4. 신고포상금 지급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제18조 • 같은 법 제25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3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2. 국가 등의 행하는 토지거래 계약의 특례	1. 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 등의 토지거래계약 허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3. 과태료	1. 토지 등의 거래에 관한 과태료 처분 및 징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과징금 부과 및 징수 2. 이행강제금 부과 3. 위반사실 확인조사 4. 과징금 과오납금 환급 및 환급가산금 지급 5. 과징금 물납신청의 허가여부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 같은 법 제6조 · 같은 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
5.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2. 개별공시지가 검증 3.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4.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 접수, 재조사 및 산정 5.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교통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교통유발 부담금부과·징 수사무에 관한 권한 2.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조사 및 부과·징수 1. 불법구조 변경차량 지도·단속 2.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등록· 정비업, 매매업, 중고자동차성능·상태 점검자, 폐차업 등에 관한 사항 3.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 4.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5. 자동차관리사업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 같은 법 제5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 같은 법 제55조 · 같은 법 제53조 · 같은 법 제72조, 제7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
3. 자동차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의 지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이륜차 동차 포함) · 임시운행허가 기간 초과 차량 지 도·단속 · 등록번호판 훼손차량 지도·단속 · 등록번호판 봉인의 멸실·훼손 지도·단속 · 등록증 미비차량 지도·단속 · 그 밖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 하는 불법 부착물 지도·단속 ·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자동차관리법」 제4조, 제84조

[주차교통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주차·정차 지도·단속 및 관련 업무	1. 주차·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2. 전인대행업체 선정 및 관리 3. 그 밖에 주차·정차 지도에 관한 업무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5조, 제161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같은 법 제147조
2. 전용차로 지도·단속	1. 전용차로 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도로교통법」 제143조, 제161조
3. 부설주차장에 대한 다음의 사무 (다만 구청 건축과에서 허가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검토 (건축협의) 2. 부설주차장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등	· 「주차장법」 제6조, 제19조 · 같은 법 제8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23조, 제24조, 제29조, 제32조
4.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다음의 사무	1.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2.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3.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 처리 4.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변경 등 신고 및 관리 5. 기계식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등	· 「주차장법」 제19조의6, 제19조의7, 제19조의8 · 같은 법 제19조의9, 제19조의10, 제19조의12 · 같은 법 제19조의13 · 같은 법 제19조의14부터 제19조의19까지 · 같은 법 제29조, 제30조

[도로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도로 등의 연결 및 도로의 점용허가	1. 도로점용허가 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및 변경 허가 3. 진출입로의 연결허가 4.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 「도로법」 제61조 · 같은 법 제52조 · 같은 법 제53조 · 같은 법 제62조
2. 도로점용허가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원상회복 2. 점용료의 징수 등	· 「도로법」 제73조 · 같은 법 제66조
3.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 위반을 했을 때에 다음의 조치를 하는 권한	1.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2.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 「도로법」 제63조 · 같은 법 제96조
4.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공익상 필요한 조치를 하는 권한	1.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조치	· 「도로법」 제97조
5. 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법정도로의 응급복구 2.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3. 도로 소파보수 4.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 「도로법」 제31조
6. 시유지 관리	1. 시유지 재산관리 및 사용수익 허가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7.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노상적치물 정비 2. 과태료의 부과 징수	· 「도로법」 제61조, 제75조 · 같은 법 제117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3. 변상금의 징수	· 같은 법 제72조
	4. 원상회복	· 같은 법 제73조
	5. 행정대집행	· 같은 법 제74조
	6. 이행강제금	· 같은 법 제100조
8.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허가(공동구를 제외한 도로부속물에 한정한다)	· 「도로법」 제36조
	2.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공익을 위한 처분	· 같은 법 제96조, 제97조
	3. 청문의 실시	· 같은 법 제101조
9. 사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사도 개설허가	· 「사도법」 제4조
	2. 사도 개설허가의 취소	· 같은 법 제13조
	3. 처분 및 조치	·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10. 도로 표지의 설치 및 유지·관리	1. 도로 구조의 보존 및 도로표지설치 및 관리	· 「도로법」 제55조
11. 자전거이용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유지·관리)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농업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농지전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농지전용 신고 2. 농지전용 변경신고 3. 전용허가의 사후관리 및 불법 전용농지 단속 4. 농지전용 신고의 취소 5. 농지전용 신고의 용도변경 승인 6. 농지(신고)의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 및 변경신고	• 「농지법」 제3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같은 법 제39조 및 제42조, 제42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 같은 법 제39조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제36조
2. 농지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농지처분의 의무 통보 및 부과 2. 농지처분 명령 및 매수 청구 3.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 지정 4.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5. 농지임대차 관리 6.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및 사후관리	• 「농지법」 제10조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제20조 • 같은 법 제8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41조의3, 제42조
3.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및 열람 교부에 관한 사항	1. 작성 및 비치 (구 농지원부 포함) 2. 교부 및 열람 3. 자경증명 발급	• 「농지법」 제49조 • 같은 법 제50조 • 같은 법 제5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농산유통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원산지의 표시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1. 원산지의 표시 등의 조사 2. 과태료 부과·징수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같은 법 제18조

[동물정책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동물보호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영업의 등록 (동물장묘업 제외) 2. 영업의 승계 및 취소 (동물장묘업 및 동물생산업 제외) 3. 등록대상 동물의 관리 등 (목줄, 배변 관리) 4. 벌칙 및 과태료 (동물장묘업과 동물생산업을 제외한 영업 및 목줄, 배변에 관한 위반)	• 「동물보호법」 제69조, 제73조 • 같은 법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제101조제4항

[녹지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공원·녹지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공원·녹지 관리 (미조성 도시공원·녹지 포함) 2.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3. 점용료의 징수 4. 법령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청문 5.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불법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6.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허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6조 · 같은 법 제24조, 제38조 · 같은 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 같은 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 같은 법 제49조 및 제53조 부터 제56조까지 · 같은 법 제27조
2. 산림자원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입목벌채 허가 2. 입목벌채 신고 3. 임산물의 굴취·채취 허가 4. 병해충 등의 예방·구제 5. 산림정화구역 내 시설의 설치 6. 임산물절취·불법입목벌채· 굴취·채취 등 단속 및 사법처리 7. 입목벌채신고 및 산림오염 방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 같은 법 제3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 「산림보호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4조 · 같은 법 제7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3.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8. 불법산지전용(산지전용 허가지 외) 등 산지불법행위 단속 및 사법처리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55조
	9. 포상금의 지급(불법신고자)	· 같은 법 제46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1.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 「산림보호법」 제30조
	2.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3. 산불예방을 위한 금지행위 등에 대한 허가	· 같은 법 제38조
	4. 사상자 보상금 지급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5. 입산허가	· 같은 법 제34조
	6. 방화 및 실화범 처벌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7.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44조
		· 같은 법 제1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같은 법 제53조
		· 같은 법 제57조

[생태하천과]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	1. 공유수면 관리 2. 공작물의 신축·개축 변경, 제거 허가 3. 접속토지의 수면 이하로의 굴착허가 4. 준설, 굴착허가 5. 인수 및 수주허가 6. 토석, 사력채취, 식물재배 및 벌채허가 7. 토석, 절개 등의 투기나 수심에 영향을 미칠 행위허가 8. 호안 방파제 등의 시설물 점용허가 9. 그 밖의 점용허가 10. 점용허가에 대한 고시 11.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조사 및 질문 12. 공유수면의 장애물 제거명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3호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5호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6호, 제7호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8호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9호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0호, 제11호 • 같은 법 제8조제6항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같은 법 제55조제1항 • 같은 법 제6조
2.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권리·의무에 관한 권한	1. 점용료,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2. 점용료, 사용료의 부과 감면 3. 점용료, 사용료의 강제징수 4. 원상회복의무 명령 면제 승인 5. 권리의무의 이전허가 6. 권리의무의 상속신고 처리 7. 허가기간 연장허가 8. 공사의 착공, 준공신고 처리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같은 법 제13조제1항 • 같은 법 제13조제8항 • 같은 법 제21조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3.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처분에 관한 권한	1. 점용·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2. 효력의 정지처분, 원상회복, 손해방지 시설의 설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같은 법 제21조
4. 소하천 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2. 소하천의 점용 등 3. 허가의 제한	· 「소하천정비법」 제1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같은 법 제15조
5. 소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소하천의 정비와 유지관리 2. 주민의견의 청취 3. 토지 등의 수용 4. 원상회복 의무 5.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처분 6.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청문 7. 허가의 실효 8. 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9. 점용료 등의 징수 10.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11. 점용료 등의 강제징수 12. 소하천공사 준공검사 13. 소요공사비의 예치 14. 점용 등의 신고 15. 소하천 정비 상태의 점검	·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6항 · 같은 법 제11조 · 같은 법 제12조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제17조 · 같은 법 제18조, 제18조의2 · 같은 법 제20조 · 같은 법 제2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제24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6. 시유지 관리	1. 시유지 사용허가	·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8조부터 20조까지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7. 하천구역 또는 하천시설 내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철거명령 등 2. 사고조사 등 3. 보고·검사 등 4. 과태료 부과·징수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제16조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제23조 • 같은 법 제31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시민안전담당관] <table><tr><td>위임사무명</td><td>단위사무명</td><td>근거법규</td></tr><tr><td>1~4. (생략)</td><td></td><td></td></tr></table> [재난대응담당관] <table><tr><td>위임사무명</td><td>단위사무명</td><td>근거법규</td></tr><tr><td>1~2. (생략)</td><td></td><td></td></tr></table> [정보통신담당관] <table><tr><td>위임사무명</td><td>단위사무명</td><td>근거법규</td></tr><tr><td>1. (생략)</td><td></td><td></td></tr></table>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4. (생략)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2. (생략)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생략)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안전정책과] <table><tr><td>위임사무명</td><td>단위사무명</td><td>근거법규</td></tr><tr><td>1~4.(현행과같음)</td><td></td><td></td></tr></table> [재난대응과] <table><tr><td>위임사무명</td><td>단위사무명</td><td>근거법규</td></tr><tr><td>1~2. (생략)</td><td></td><td></td></tr></table> [정보통신과] <table><tr><td>위임사무명</td><td>단위사무명</td><td>근거법규</td></tr><tr><td>1. (현행과 같음)</td><td></td><td></td></tr></table>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4.(현행과같음)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2. (생략)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현행과 같음)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4. (생략)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2. (생략)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생략)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4.(현행과같음)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2. (생략)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생략)	1.·2. (생략)		1.(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2. (생략)	1. (생략)		2.(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신설>			3. 기록물관리 전산화	1. 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	· 「공공기록물 관리 에 관한 법률」 제1 9조 · 같은 법 제21조
[인적자원과]			[인적자원과]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6급 공무원에 대한 보 직, 전보(구간 전보 제 외)	· (생략)	1.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6급 공무원에 대한 보 직, 전보, 징계(다만, 구간 전보, 중징계, 5급 이상 또는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공무원과 동 일 건으로 관련된 공무 원의 징계는 제외)	· (현행과 같음)
	2. 7급 이하 공무원에 대 한 보직, 전보, 승급, 휴 직, 복직, 면직, 징계(다 만, 구간 전보 및 6급과	· (생략) · <신설>		2. 7급 이하 공무원에 대 한 보직, 전보, 승급, 휴 직, 복직, 면직, 징계(다 만, 구간 전보 및 중징	· (현행과 같음)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

현행			개정안		
	동일 건으로 관련된 7급 이하의 징계, 구를 달리하는 7급 이하의 징계는 제외) <신 설>			계, 5급 이상 또는 소속 기관을 달리하는 공무원과 동일 사건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제외) 3.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개방형 직위 제외)	· 같은 영 제1조의4
<신 설>			[자치분권과]		
			위임사무명 1.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위사무명 1. 자율방범대 경비 등의 지원	근거법규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고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복지정책과]			[돌봄정책과]		
위임사무명 1.~3. (생략)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위임사무명 1.~3 (현행과 같음)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현행			개정안		
4. (생략)	1. (생략) 2. (생략)	· (생략)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5조 · (생략)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4.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9조, 제15조 · (현행과 같음) · <삭제>
5.·6. (생략)			5.·6.(현행과 같음)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생략)	1.·2. (생략)		2.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생략)	· (생략) · (생략) ·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1조, 제24조		3.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1조
	4. (생략)			4. (현행과 같음)	
3.~7. (생략)			3~7. (현행과 같음)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현행			개정안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생략)	1. (생략)	• (생략) • <신설>	2.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의2</u>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3.·4. (생략)	2. (생략)		3.·4.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기후에너지과]			[기후대기과]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2. (생략)			1.·2.(현행과 같음)		
3. 「액화석유가스의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과태료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삭제>		

현행			개정안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권한	처분	사업법」 제33조, 제34조, 제44조, 제48조, 제57조 및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1.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 수리 2. 고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및 과태료 처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 같은 법 제15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삭 제>		
5.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6.(생략)	1. 도시가스 특정 사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도시가스사업법」 제27조, 제29조	<삭 제>		
<신 설>			3.(현행 제6호와 같음)		
			[에너지정책과]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액화석유가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액화석유가스의

현행	개정안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권한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 따른 다음의 권한 3. 「도시가스사 업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대한 지도점검 및 과태료 처분 1.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 수리 2. 고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및 과태료 처분 1. 도시가스 특정 사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제34조, 제44조, 제48조, 제57조 및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 같은 법 제15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 「도시가스사업법」 제27조, 제29조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현행			개정안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생략)	1 쓰레기규격봉투 제작, 관리 및 공급 (공공용쓰레기규격봉투에 <u>한한다</u>)	· (생략)	1. (현행과 같음)	1 ----- ----- (----- <u>한정한다</u>)	·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u>폐기물관리법</u> 각종수수료 <u>부과·징수</u>	· <u>같은 조 제18조, 제19조</u>	<u><삭제></u>		
	4. (생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5.·6. (생략)		4.·5. (현행 제5호 및 제6 호와 같음)		
	7. (생략)	·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6. (현행 제7호와 같음)		· <u>같은 법 제15조의2</u>
	8. <u>생활폐기물의 처리</u> (보행자전용도로를 포함한 가로청소에 <u>한한다</u>)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7. ----- (----- ----- <u>한정한다</u>)		· <u>같은 법 제14조</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생략)	1. (생략)		3.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생략)	· <u>같은 조 제19조</u>		2. (현행과 같음)	· 「폐기물관리법」 제68 <u>조제3항</u>
4. (생략)			4.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식품안전과]			[식품안전과]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4.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허가, 신고 대상 식품위생영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1.~5. (생략)		4. 제1호 및 제2호----- ----- ----- -----	1.~5. (현행과 같음)	
5.~11. (생략)			5.~11. (현행과 같음)		
12. (생략)	1. (생략)	· 「위생용품관리법」 제4조 · (생략) · (생략)	12.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위생용품 관리법」 —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13. (생략)	1. (생략)	· 「위생용품관리법」 제5조	13.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위생용품 관리법」 —
	2. (생략)	· 「위생용품관리법」 제6조 · (생략)		2.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 · (현행과 같음)
	3. (생략)	· 「위생용품관리법」 제7조 · (생략) · (생략)		3.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4. (생략)	·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		4.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
	5. (생략)	· 「위생용품관리법」 제9조		5.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
	6. (생략)	· 「위생용품관리법」 제22조		6.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

현행			개정안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4. (생략) 15. (생략) <신설>	7. (생략) 8. (생략) 9. (생략) 1.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위·해측 등 관리	·(생략) ·「위생용품관리법」 제23조 ·(생략) ·「위생용품관리법」 제32조 ·「위생용품관리법」 제34조 ·「위생용품관리법」 제27조	14.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16. 개식용 식품 접객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1. ----- -위축·해축----- 1. 운영신고 2. 실태조사 3. 이행조치명령 4. 과태료 5. 벌칙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 · 같은 법 — · 「위생용품 관리법」 —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 별법」 제10조 · 같은 법 제7조 · 같은 법 제14조 · 같은 법 제18조 · 같은 법 제17조
[주요과]			[주요과]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생략)	1.~7. (생략) 8. 벌칙 및 과태료	(생략)	1. (현행과 같음)	1.~7. (현행과 같음) 8. -----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2. (생략)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u>한함</u>)		2. (현행과 같음)	(----- <u>한정한다</u>)	
[건축정책과]			[건축정책과]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생략)	1.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 사용승인 등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u>2,000</u>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 분의 <u>3미만</u> 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허가, 사용승인 (단, 증축 연면적이 <u>2,000</u> 제곱 미터 이하인 경우에 <u>한한다</u>) 3. 허가와 신고사항 <u>변경</u> , 용 도변경, 건축물 사용승인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u>2,000</u> <u>제곱미터</u> 이하인 건축물)	(생략) (생략) (생략)	1. (현행과 같음)	1. ----- ----- (----- <u>2천</u> -----) 2. ----- ----- <u>3 미만</u> ----- ----- (<u>다만</u> ----- <u>2천</u> ----- ----- <u>한정한다</u>) 3. ----- <u>신고사항 변경</u> ----- ----- (----- <u>2천</u> <u>제곱미터</u> -----) 2. ----- ----- ----- ----- (<u>다만</u>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위반 건축물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위반 건축물 및 대수선할 때의 조치(<u>단</u> , 건축물의 냉 방설비, 조경 유지관리 및	(생략)			

현행			개정안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u>2,000</u>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처분은 층수와 면적의 제한을 제외한다)	· 같은 법 제27조, 제28조, <u>제29조</u>	(----- ----- <u>2</u> <u>천</u> ----- -----)	----- -----) 2.~4. (현행과 같음)	· ----- ---- <u>제29조의2</u>
3.~6. (생략)	2.~4. (생략)		3.~6. (현행과 같음)	2.~4. (현행과 같음)	
7. 건축물 유지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4. (생략)		7. ----- ----- -----	1.~4. (현행과 같음)	
(6층 이하로서 연면적 <u>2,000</u> 제곱미터 이하 건축물)	5. (생략)		(----- ----- <u>2천</u> ----- -----)	5. (현행과 같음)	
8. (생략)	6.~7. (생략)		8. (현행과 같음)	6.~7. (현행과 같음)	
9. 공사중단 장 기방치 건축물 정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2. (생략)		9. ----- ----- ----- ----- (----- ----- ----- ----- ----한정한다)	1.~2. (현행과 같음)	
(구청장이 건축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한 건축물에 한한다)					

현행			개정안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5. (생략)	1. 자치단체, <u>한국토지공사</u> ,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 등의 토지거래계약 허가 1. (생략)	· <u>같은법</u> 제14조 · (생략) · <u>같은법</u> 제28조 ·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5. (현행과 같음)	1. ----- <u>한국토지주택공사</u> ----- ----- 1. (현행과 같음)	· 「 <u>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u> 」---- · (현행과 같음) · 「 <u>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u> 」---- · (현행과 같음)
[주차교통과]			[주차교통과]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u>주·정차</u> 지도·단속 및 관련 업무 2. (생략)	1. <u>주·정차</u>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2. (생략) 3. 그 밖에 <u>주·정차</u> 지도에 관한 업무	(생략) · <u>같은법</u> 147조	1. <u>주차·정차</u> ----- ----- ----- 2. (현행과 같음) 3. ----- <u>주차·정차</u> ----- ----- 2. (현행과 같음)	1. <u>주차·정차</u> ----- ----- 2. (현행과 같음) 3. ----- <u>주차·정차</u> ----- -----	(현행과 같음) · ----- <u>제147조</u>

현행			개정안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3. 부설주차장에 대한 다음의 사무 (다만, 구청 건 축과에서 허가 하는 건축물)	1. · 2. (생략)		3. ----- ----- (----- -----건축물 에 한정한다)	1. · 2. (현행과 같음)	
4. (생략)	1.~4. (생략) 5. 기계식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치 <u>지도단속</u> 및 행 정처분 등		4.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 -----지도·단속----- -----	
[도로정책과]			[도로정책과]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도로 등의 연 결 및 도로의 점용허가	1, <u>도로점용 허가</u> 2.~4. (생략)	(생략)	1. ----- -----및 도로 -----	1, <u>도로점용허가</u> 2.~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생략)	1. (생략) 2. (생략)	· <u>같은 법</u> 제73조 (생략)	2.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 <u>도로법</u> 」 제73조 (현행과 같음)
3. 도로의 점용허 가를 받은 자가 법령 위반을 한 였을 때에 다음	1. <u>도로점용 허가</u> 의 취소 2. <u>법령위반자</u> 등에 대한 처	· <u>같은 법</u> 제63조 (생략)	3. ----- ----- ----- ----- <u>했을 때에</u> -----	1. <u>도로점용허가</u> 의 취소 2. <u>법령 위반자</u> 등에 대한 처	· 「 <u>도로법</u> 」 제63조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 4.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공익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권한 5.~7. (생략) 8. (생략) 9. (생략) 10. · 11.(생략)	분 1. (생략) 1.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허가(공동구를 제외한 도로부속물에 한한다) 2. · 3. (생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 같은 법 제97조 (생략) · 같은 법 제14조	-----하는----- 4. ----- -----하는----- 5.~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10. · 11.(현행과 같음)	분 1. (현행과 같음) 1. ----- ----- (----- ----- <u>한정한다</u>) 2. · 3.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 「도로법」 제97조 (현행과 같음) · -----제13조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현행			개정안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생략)	1.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경우 건축 연면적의 <u>2,000</u> 제곱미터 이하, 6층 이하) 2. 건축에 관한 구청장 신고·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행위(연면적 <u>2,000</u> 제곱미터 이하, 6층 이하) 3.~6. (생략)	(생략)	1. (현행과 같음)	1. ----- (----- ----- <u>2천</u> -----) 2. ----- ----- -----(<u>2천</u> -----) 3.~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생략)	1.·2. (생략) 3. (생략) 4.~6. (생략)	· <u>같은 법 제39조 및 제42조</u> · (생략)	1.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6. (현행과 같음)	· <u>같은 법 제39조 및 제42조, 제42조의2</u> · (현행과 같음)
2. (생략)	1. (생략) 2.~5. (생략) <u><신설></u>	· <u>같은 법 제10조</u>	2.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5. (현행과 같음) 6.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및	· 「 <u>농지법</u> 」 제10조 · <u>같은 법 제41조의3,</u>

현행			개정안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3. (생략)	1. (생략) 2. 3. (생략)	· <u>같은 법</u> 제49조	3. (현행과 같음)	<u>사후관리</u> 1. (현행과 같음) 2. 3. (현행과 같음)	<u>제42조</u> · 「 <u>농지법</u> 」 제49조
[농산유통과]			[농산유통과]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u>동물보호에 관한 다음의 사무</u>	1. <u>영업의 등록 (동물장묘업 제외)</u> 2. <u>영업의 승계 및 취소 (동물장묘업 및 동물생산업 제외)</u> 3. <u>등록대상 동물의 관리 등 (목줄, 배변 관리)</u> 4. <u>벌칙 및 과태료 (동물장묘업과 동물생산업을 제외한 영업 및 목줄, 배변에 관한 위반)</u>	· 「 <u>동물보호법</u> 」 제33조 · <u>같은 법</u> 제35조, 제38조 · <u>같은 법</u> 제13조제2항 · <u>같은 법</u> 제46조, 제47조	<삭제>		
2. (생략)			1. (현행 제2호와 같음)		

현행			개정안		
<u><신 설></u>			<u>[동물정책과]</u>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동물보호에 관한 다음의 사무	1. 영업의 등록 (동물장묘업 제외) 2. 영업의 승계 및 취소 (동물장묘업 및 동물생산업 제외) 3. 등록대상 동물의 관리 등 (목줄, 배변 관리) 4. 벌칙 및 과태료 (동물장묘업과 동물생산업을 제외한 영업 및 목줄, 배변 에 관한 위반)	· 「동물보호법」 제69 조, 제73조 · 같은 법 제75조부터 제7 7조까지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제101조제4항
<u>[생태하천과]</u>			<u>[생태하천과]</u>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	1. (생 략)		1. 공유수면--- ----- -----	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2. (생략)	2. 공작물의 <u>신·개축</u> 변경, 제거 허가 3.~12. (생략) 1.. (생략)	(생략) · <u>같은 법</u> 제13조제1항	2. (현행과 같음)	2. ----- <u>신축·개축</u> ----- ----- 3.~12.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 <u>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u> 」 -----
	2.~5. (생략) 6. (생략) 7.·8. (생략)	· <u>같은 법</u> 제21조		2.~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8. (현행과 같음)	· -----제16조
3. (생략)	1. (생략)	· <u>같은 법</u> 제19조	3.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 <u>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u> 」 -----
4.~7. (생략)	2. (생략)		4.~7.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복지정책과] <table><tr><th>위임사무명</th><th>단위사무명</th><th>근거법규</th></tr><tr><td>1. (생략)</td><td>1. (생략)</td><td>·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5조</td></tr><tr><td>2. (생략)</td><td></td><td></td></tr></table> [노인복지과] <table><tr><th>위임사무명</th><th>단위사무명</th><th>근거법규</th></tr><tr><td>1. (생략)</td><td></td><td></td></tr><tr><td>2. (생략)</td><td>1. · 2. (생략)</td><td></td></tr><tr><td></td><td>3. (생략)</td><td>·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td></tr><tr><td></td><td>4. (생략)</td><td></td></tr></table> [장애인복지과] <table><tr><th>위임사무명</th><th>단위사무명</th><th>근거법규</th></tr><tr><td>1. (생략)</td><td>1.~4. (생략)</td><td></td></tr><tr><td></td><td>5.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및 관리</td><td></td></tr></table>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생략)	1. (생략)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5조	2. (생략)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생략)			2. (생략)	1. · 2. (생략)			3. (생략)	·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4. (생략)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생략)	1.~4. (생략)			5.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및 관리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돌봄정책과] <table><tr><th>위임사무명</th><th>단위사무명</th><th>근거법규</th></tr><tr><td>1. (현행과 같음)</td><td>1. (현행과 같음)</td><td>·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td></tr><tr><td>2. (현행과 같음)</td><td></td><td></td></tr></table> [노인복지과] <table><tr><th>위임사무명</th><th>단위사무명</th><th>근거법규</th></tr><tr><td>1. (현행과 같음)</td><td></td><td></td></tr><tr><td>2. (현행과 같음)</td><td>1. · 2. (현행과 같음)</td><td></td></tr><tr><td></td><td>3. (현행과 같음)</td><td>·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td></tr><tr><td></td><td>4. (현행과 같음)</td><td></td></tr></table> [장애인복지과] <table><tr><th>위임사무명</th><th>단위사무명</th><th>근거법규</th></tr><tr><td>1. (현행과 같음)</td><td>1.~4. (현행과 같음)</td><td></td></tr><tr><td></td><td>5.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td><td></td></tr></table>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2. (현행과 같음)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		4. (현행과 같음)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생략)	1. (생략)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5조																																																																	
2. (생략)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생략)																																																																			
2. (생략)	1. · 2. (생략)																																																																		
	3. (생략)	·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4. (생략)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생략)	1.~4. (생략)																																																																		
	5.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및 관리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																																																																	
2. (현행과 같음)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																																																																	
	4. (현행과 같음)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1.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																																																																		